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32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4. 체결된 상속재산협의 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5. 6. 9.경 소외 D 주식회사로부터 112,000,000원을 대출기간 23년, 3년 거치 후 상환기간 20년, 지연배상금율 연 18% 등으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 위 D은 2018. 3. 20. 원고에게 C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3. 22.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5. 10. C을 상대로 위 대출잔금 16,092,0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21. 승소판결을 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2018가소1928965 판결).

다. 한편 망 E은 2019. 12.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F, C, 피고, G이 있었다. 그런데 망인의 소유였던 거제시 H 대 216㎡과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4. 18. 피고는 2019. 12. 14.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협의분할일인 2023. 4. 18.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판결금 채무 외에 I, J, K 등에 총 43,909,000원(원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사단법인 L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이 원고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년경 C과의 사이에 망 E이 사망하면 C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 약정 이행에 따른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망 E의 사망시까지 망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고의 기여분이 적지 아니하고, 협의분할 당시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1 내지 3호증,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사단법인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 사이에는 2015년경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고,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그와 같은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실질적으로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앞서 인정한 사정 내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이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망인이 거주하던 목조스레이트 건물이 있었는데 2003년 폭풍으로 완파되었다. 이에 2004년경 위 토지에 주택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을 담보로 36,000,000원을

대출받아 주택신축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2010. 3. 1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② 이후 피고는 2015. 1. 8.경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인 2015년경 E의 상속인인 C, F, G은,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M(피고의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재산의 상속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산상속 협의서를 작성하였다(위 협의서에 G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나, 위 G은 자신도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92,000,000원(토지와 건물을 합한 금액) 정도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부분을 신축하는데 피고가 드는 비용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였고 2015. 1. 6.경 피고가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인인 G, F 또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5년경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망 E의 상속인들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지는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및 그 협의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그와 같은 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한편 C은 2017년경부터 신용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와 C은 형제관계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2015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향후 취득할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 내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와 통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금진

별지